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

(김평남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5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평남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전석기, 김화숙, 고병국,
정진술, 오현정, 전병주,
김정태, 이태성, 김소영,
최웅식, 이현찬, 김제리,
홍성룡, 박순규, 문장길 의원 (15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행정사무를 위탁함에 있어, 공공위탁을 실시할 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.
- 따라서 공공위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산하 공기업 등에 대한 공공위탁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본 조례는 공공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
- 나. 공공위탁에 대한 시장의 의회 동의 및 보고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공공위탁 사무의 선정과 평가·심의를 위한 시장의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시장의 의무 및 검토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사무 위탁에 대한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바.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(안 제13조)
- 사. 시장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의무 불이행·협약조건 위반에 대한 위탁 취소에 대해 규정함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가운데 일부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에 맡겨 그 명의로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공공단체”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, 국가나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또는 자치구,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설립·운영에 대하여 관리·감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, 그 밖에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국가나 시 또는 자치구,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3. “수탁기관”이란 시장의 권한을 공공위탁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.
4. “위탁사무”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5. “재위탁”이란 공공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

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6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위탁사무에 관해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공공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공공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공공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.

제5조(공공위탁 동의안의 내용)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공공위탁

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명칭 및 내용(시설인 경우 시설의 개요를 포함한다)
2. 공공위탁의 추진 근거 및 그 필요성
3. 공공위탁 기간
4. 수탁기관 선정 방식
5. 소요 예산 및 그 산출 근거
6.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
7. 기타 공공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공공위탁의 운영평가)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선정과 그 운영 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시장은 공공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위원회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. 이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수준

2. 재정 부담 능력
3.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
4. 수탁기관의 고용·노동 환경
5. 책임능력 및 공신력

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적격자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책임 및 명의)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.

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9조(협약의 체결)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위탁사무의 명칭 및 내용
4. 위탁사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.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와 관련한 고용·노동 환경의 개선 노력
 6. 지도·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탁협약의 내용은 「공증인법」 제1조의2제1호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위탁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.
 - ④ 시장은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(재계약) ① 시장은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90일 전까지 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동안 시장이 실시한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,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한 감사 결과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의 지원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협약 이행을 보증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보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와 관련한 수입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3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그 위탁사무를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수행할 수 없다.

② 수탁기관은 그 위탁사무의 내용과 관계 없이 위탁시설이나 장비, 비용 등을 사용할 수 없다.

③ 수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와 위탁협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장은 그 시설을 기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⑤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

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·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도·점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지도·점검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도·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기간·과정·기준·서식·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편람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(성과평가) ① 시장은 위탁사무 가운데 연간 위탁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끝나기 90

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,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탁비, 지원비용 등을 돌려받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.